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2203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조성우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11.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원고들이 E을 운영하던 D에 대하여 미지급 수산물공급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D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명의를 신탁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D에 대한 미지급 수산물공급대금 채권(원고 A 42,000,000원, 원고 B 38,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의 각 물품대금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와 D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자금 및 위 근저당권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등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7.6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579.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7920분의 4220

- 이상 -

